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5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조계원 · 이개호 · 김병주
박지원 · 안호영 · 주철현
최혁진 · 서미화 · 안도걸
정준호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

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이중당적 여부 확인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당원 여부를 다른 정당(「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받는 정당에 한정한다)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이중당적 여부 확인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헌으로 정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투표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 투표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2(이중당적 여부 확인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당원 여부를 다른 정당(「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받는 정당에 한정한다)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소한의</u>

	<u>정보를 요구·제공하여야 하고</u> <u>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중앙</u> <u>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u> <u>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u> <u>야 한다.</u>
	<u>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u> <u>이중당적 여부 확인이 끝난 경</u> <u>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u> <u>보를 폐기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u> <u>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u> <u>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u> <u>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입당강요죄 등) ----- ----- ----- ----- ----- <u>2천만원</u> ----- -----.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① ----- ----- ----- ----- <u>1천만원</u> ----- -----.

<u><신 설></u>	②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 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투표에 참여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헌으 로 정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투표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 하기 위한 당내경선 투표
---------------------------	---